



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

외교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베트남 「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」 초안 의견조회

수신 : 장관(동남아2과장)

사본 : 주다낭총영사, 주호치민총영사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, 국제협력담당관, 화장품정책과장), 중소벤처기업부장관(글로벌성장정책과장),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위원장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)

발신 : 주베트남대사

최근 베트남 보건부는 현행 화장품 관리 규정(시행령 제93/2016/N?-CP)의 미비점을 개선하고,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중인 바, 그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.

1. 추진 배경 및 현행 한계

- 복수 법률 중첩 적용에 따른 행정 혼선 해소 및 시장 변화 수용
 - ▲ 화장품 관련 단독 법률의 부재에 따른 복수 법률(투자법·제품품질법 등) 중첩 적용으로 제도 운영 상 혼선 발생, ▲ 사전 신고(공포) 제도임에도 실질적 사전 서류 심사가 강제되고 있어 기업의 행정 부담 가중, ▲ 현행 라벨링·광고 규정이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규제 전반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점 지속 제기

2. 개정안 주요 내용

가.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

- (사전심사 축소 및 사후관리 전환) 기존의 명목상 '공포(신고)' 제도하에서 행해지던 사전 서류 심사 및 광고 승인 절차를 유통 후 사후 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기업 부담 완화 유도
- (아세안 기준 부합) 아세안 화장품 협정에 따른 금지·제한 물질 목록을 상시 업데이트

이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나. 유통 제품에 대한 기업 책임 확대

- (PIF(제품정보파일) 의무화) 유통 기업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제품 정보 파일을 자체 구축·보관해야 하며, 데이터의 진위 여부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함.
- (부작용 보고 의무) 제품 시판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부 보고 의무 신설

다. 생산 및 CGMP 인증 절차 일원화 (베트남 내 제조법인 해당)

- (통합 신청 가능) 기존의 '생산조건 허가'와 'CGMP(우수화장품제조기준) 인증' 요건을 일원화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
- (유효기간 무기한 전환 및 위험 관리)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하는 반면, 3~5년 주기의 정기 점검 및 불시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 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시스템 도입. 관련 정보는 '국가 화장품 데이터베이스'에 실시간 기록

3. 관찰 및 평가

- 규제 당국의 사전 심사 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던 관련 기업의 행정적 부담(광고 승인, 복잡한 서류 절차 등)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
- 반면, 제품 정보 파일(PIF) 관리 및 사후 불시 점검 강화 등 유통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안전성 증명 책임은 대폭 가중될 것으로 전망
- 향후 우리 기업들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, 향후 개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련 업계에 적기 전파 필요. 끝.

붙임 1. 관련 기사(베어본) 1부.

2.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초안(베어본) 1부. 끝.

주 베 트 남 대 사



수신자 동남아2과장, 주다낭총영사, 주호치민총영사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)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국제협력담당관), 식품의약품안전처장(화장품정책과장), 중소벤처기업부장관(글로벌성장정책과장),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위원장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)

1등서기관 **방성연** 참사관 전결 2026. 5. 29. **김동준**

협조자

시행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 (2026. 5. 29.) 접수 화장품정책과-3809 (2026. 6. 1.)
민국대사관-3910

우 Block No.4 Diplomatic Complex, Xuan Tao, Bac Tu Liem, Hanoi / <http://vnm-hanoi.mofa.go.kr>

전화번호 (84-4)3831-5111 팩스번호 (84-4)3831-5117 / 비공개(2)